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3
----------	------

제출일자 : 2022. 12. 6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른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및 운영방식(안 제5조, 안 제6조)
- 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 자격 및 선정(안 제7조, 안 제8조)
-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 및 해지(안 제9조, 안 제10조)
- 마. 지도점검 및 운영비 보조(안 제16조, 안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2. 10. 20.~ 11. 9.)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 미첨부 사유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돌봄 아동”이란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아동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명칭은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병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구역에 둔다.

제5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돌봄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제6조(운영방식) ① 센터는 군 직영방식 운영이 원칙이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각종 자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 자격) 제6조에 따라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둔 법인 또는 단체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군수 또는 다른 기관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민간위탁을 받고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위탁 협약의 해제·해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빌린 명의를 사용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사무위탁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 자격에 미달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8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센터의 설치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제9조(위탁기간)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운영평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사무위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수탁협약서를 작성할 때 협약의 해지사유를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둘 수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센터시설의 원상회복,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비품 일체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부대시설과 장비비품은 군수와의 협의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앓는 경우
2. 센터시설·장비비품 등을 고의로 파손·훼손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등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한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운영시간) ① 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19: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③ 초등학교 학기·방학 중에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센터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4조(이용료 결정 및 수납) ① 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돌봄 아동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
4. 급·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지역 여건 및 제공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에 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 후 센터 내 게시하고 돌봄 아동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급식·간식을 제공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이용료 외에 별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집행 및 정산)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후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경되

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변경된 집행계획을 돌봄 아동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고 변경된 계획에 집행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반기별로 돌봄 아동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및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1. 비용 발생 요인

-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라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재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비용이 대략적으로 예측은 되나
- 사업의 추진방향과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각 분야 세부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비용을 예측하여 추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